

부산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가단341613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영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4,532,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5.부터 2021. 6.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1. 11. 4.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10.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사이에 2021. 4.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32,9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C는 원고에게 32,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성립

① 원고는 2019. 12. 3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체결한 특약점계약에 따른 외상미수채무를 피고 B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D에게 보험금액 7,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B이 D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B은 원고로부터의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0일 경과 후부터는 연 9%)을 가산하여 변상하도록 되어 있다.

③ 이후 피고 B이 2020. 8. 4.부터 D에 대한 외상미수채무를 수차례 변제하지 못하여 그 미수금채무가 누적되자, D은 2021. 4. 6. 원고에게 외상미수금채권회수를 위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는 2021. 5. 4. D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험금으로 44,532,195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전후로 자신 소유의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고 함)를 각 마쳤다.

등기 순번	등기원인(처분행위)	등기의 표시(내용)	근저당권설정자 및 매도인	근저당권자 및 매수인(수익자)
13	2020. 10. 27. 근저당권설정계약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20. 10. 27. 접수 제391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40,000,000원)	피고 B	피고 C
5	2021. 4. 23. 매매계약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21. 4. 29. 접수 제17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	피고 C

다. 피고들의 관계

피고 C의 아버지는 E이다. E는 피고 C의 친모와 2000. 11. 22. 이혼한 다음, 2010. 9. 27. 피고 B과 재혼하였다가 2021. 2. 17. 협의이혼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의 계모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나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44,532,195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21. 5. 5.부터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30일째인 2021. 6. 3.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2021. 11. 4.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하여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인 2020. 10. 27.과 2021. 4. 23.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2019. 12. 30.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 B은 2020. 8. 4.부터 D에 대한 외상미수채무를 수차례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0. 10. 27.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인 2021. 4. 6.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1. 5. 4.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44,532,1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B의 무자력

1) 피고 B의 적극재산

갑 16, 17호증, 을나 6호증의 각 기재, 2023. 5. 15.자 F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피고 B이 보유한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와 2019년형 중고승용차(벤츠E 220d)가 유일한데,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000,000원이고, 위 중고승용차의 가액은 37,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 가액은 총 107,000,000원이다.

2) 피고 B의 소극재산

갑 1 내지 9,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은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원금 44,532,195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G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37,040,000원, ③ H에 대한 대출금채무 44,731,000원, ④ I카드 금융팀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1,837,000원 ⑤ I카드 심사부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8,512,000원 ⑥ J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0,000원 합계 166,652,19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⑤번 카드대금 채무 8,512,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1. 11. 11. 발생한 채무이고 ⑥번 J조합 대출금 채무 30,000,000원은 2020. 11. 10.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2. 3. 21. 신용정보조회회답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피고 B의 I카드대금 채무는 위 기재된 내용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⑥번 J조합 대출금 채무 30,000,000원은 2020. 10. 27.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소극재산에 포함될 뿐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대로 ⑤번과 ⑥번의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는 그대로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적극재산은 107,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166,652,195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담보여력이 유일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 및 피고 B의 사해의사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나아가 피고 B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뿐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라.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의 항변

피고 C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① 피고 C는 2016. 7. 25.과 7. 29. 이틀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위 차용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위 차용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② 피고 C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할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있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는 그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②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경위가 피고 C의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나 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와 그의 남편 K가 2016. 7. 25.과 7. 29. 이들에 걸쳐 E의 L조합 예금통장으로 합계 7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 달리 피고 B이 E의 위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돈을 수령하였다거나 E를 통하여 위 돈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가 피고 B에 대해 7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피고 C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③ 설령 피고 C가 피고 B에게 7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 B이 채권자 중 1인인 피고 C에게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과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는 피고 C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C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1) 사해행위 취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1. 4. 29. 해지되었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후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및 반환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때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이 사건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가액배상

가) 갑 7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C가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순번 13번) 외에도 2018. 9. 4.자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55,2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순번 12번, 근저당권자: G은행)이 있었는데,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1. 4. 29. 새로운 근저당권(순번 16번, 근저당권자: F은행)을 설정하면서 위 선순위 근저당권(순번 12번)을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먼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 대해 살피건대, 갑 16호증(담보물평가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1. 4. 29.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F은행이 2021. 4. 26.자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한 사실이 있다. 그 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 거래가는 75,000,000원, 매매상한가는 80,000,000원, 매매하한가는 70,000,000원으로 평가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조사 가격을 70,00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21. 4. 26.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7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역시 위와 같을 것으로 추단된다.

라) 이에 대해 피고 C는 올라 제10호증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결과를 근거로 같은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2020년도 2분기에 6,000만 원(거래 2건), 2020년도 4분기에 6,500만 원(거래 1건), 2021년 1월에 6,500만 원(거래 5건)이었던 점을 들어 위 거래대금의 평균인 63,33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액 배상할 경우 부동산의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위 2021년 1월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더 가까운 2021. 4. 26.에 조사된 가액인 7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70,000,000원이고,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12번, 근저당권자: G은행)의 피담보채무액이 37,04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은 32,960,000원(= 아파트 가액 70,000,000원 - 피담보채무액 37,040,000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구상금 채권액 44,532,195원보다 적다. 결국 사행행위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인 32,960,000원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가액 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피고들은, 관련사건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13576 구상금 사건의 판결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63,330,000원(위 판결문에서는 70,000,000원으로 판단)인데 반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77,040,000원(= G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37,040,000원 + 피고 C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40,000,000원)으로 위 시가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이상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제대상인 피담보채무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므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0. 10.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 사이에 2021. 4.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32,9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 C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32,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모두 이유 있다.

판사 장용기

별지

부동산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거제시 M, N에 있는 O건물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슬래브지붕 12층 공동아파트 및 계단실, 관리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P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59.73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거제시 M 대 4978㎡

2. 경상남도 거제시 N 대 208㎡

대지권 종류: 1, 2 소유권

대지권 비율: 5186분의 31.52785 끝.

